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위한 법관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 방안(요약본)

2023. 6.

사법행정사무회의의 사법정책분과위원회

1. 검토 배경 및 현행 사무분담 기간

가. 검토 배경

▣ 사실심 충실화 및 법관 전문화의 필요성, 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

- 법관의 전문성 고양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 확보 필요
- 최근 사건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이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고, 이는 사법부 신뢰 저하로 연결될 우려 ⇨ 사무분담 변경 횟수를 줄여 사건처리가 연중 고르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효율성 및 균질성 제고

나. 현행 사무분담 기간¹⁾

▣ 최소 사무분담 기간

- 원칙: 본안 재판장 2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 1년(대부분 배석판사)
- 예외: 민사소액, 형사정식재판전담(1년), 전문법관(해당 보임기간), 전문재판부 근무법관, 조정전담(2년), 고법판사(3년, 형사 2년), 영장전담(6개월)

다. 외국 법원의 사무분담 기간

- 미국, 독일은 대체로 정기적 전보인사나 사무분담 변경이 없고, 일본은 정기적 전보인사가 이루어지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사실상 사무분담 변경이 없음 ⇔ 우리 법원은 대규모 정기적 전보인사도 실시되고,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기간 내에도 사무분담이 변경됨

2. 사무분담 기간 장기화 필요성

1)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이하 ‘사무분담예규’),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 민사 및 가사조정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등 참조



가. 현황

- 매년 재판장(합의부장 및 단독판사)의 상당수가 교체⁸⁾되고, 배석판사는 대체로 1년마다 변경됨

나. 사무분담 장기화의 필요성

■ 업무처리능률의 제고

- 사무분담 변경 전후 업무 처리율이 평균보다 낮음 ⇨ 잦은 사무분담 변경을 지양함으로써 업무에 대한 책임감 및 업무처리 능률 제고

■ 심리주체와 판결주체의 분리 방지

- 잦은 사무분담 변경에 따라 변론절차 내지 공판절차가 자주 갱신됨 ⇨ 판결의 신뢰도 저하, 직접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 몰각 우려

■ 법관 전문성 확보

- 분쟁의 복잡·다양화, 형사 사건에 있어서 공판중심주의의 실질적 구현 등에 따른 법관의 전문성 강화 필요 ⇨ 사무분담기간 장기화 시 보다 다양하고 많은 사건 처리경험을 축적하여 대국민 사법서비스 제고 가능

3. 사무분담 장기화 기본원칙의 설정 및 시행방안

가. 사무분담 장기화 기본원칙의 설정

■ 『1 법원, 1 사무분담』 원칙(판사가 한 법원에서 하나의 사무분담만을 담당)

- 여러 지역에 있는 다양한 규모의 법원 및 지원에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간명한 인사원칙을 설정 필요 ⇨ 사법정책분과위원회는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으로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의 도입을 제안함

■ 『1 법원, 1 사무분담』 원칙의 구체적 내용

- ① 본안 재판장(합의부 재판장, 단독 재판장)에, ② 3년을 상한으로, ③ 전체 재판부(형사 포함)에 적용

8) 전보인사주기(2~4년)와 재판장 최소근무기간(2년)의 불일치가 하나의 요인임



- 사무분담 장기화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체 법관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원칙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예외를 설정하는 방식을 택함
- 비선호 사무분담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무분담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되는 경우 비선호 사무분담을 담당하는 판사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매너리즘에 빠질 우려 등 부작용 예상됨 ⇨ 현행 인사 주기 등을 고려하여 하나의 사무분담을 담당 기간의 상한은 3년으로 정함이 바람직함

나. 사무분담 장기화 원칙에 대한 예외

■ 본안 재판부 중 민사소액사건, 형사정식재판청구사건 담당재판부(각 최소 근무기간 1년) 및 신청, 영장¹²⁾, 회생, 비송사건 등 비본안 재판부

- 업무처리의 연속성보다는 접수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사무분담으로서 사무분담을 장기화할 필요가 크지 않고, 사무분담을 정하는 과정에서 1년 단위 근무 보직을 확보할 필요성 있음

■ 배석판사 : 최소 근무기간 1년

- 법조일원화의 전면 시행으로 신입법관이 부장판사 보임 전 경험할 수 있는 사무분담이 줄어드는 상황 ⇨ 저연차 법관이 다양한 사무분담을 경험하여 사건처리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하므로, 기존과 같이 1년 단위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함

■ 고등법원 판사(법관인사규칙 제10조) : 민사, 가사, 행정 3년, 형사 2년¹³⁾

■ 장기근무법관

- 한 법원에서 5년(서울권) 내지 최대 10년(지방권)까지 근무하므로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그대로 관철하기는 어려움

■ 한 법원에서 4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 3+1년의 형태로 운영¹⁴⁾

-
- 12) 관련 법령에 의하면 최소 근무기간은 6개월이나, 실무상 1년 단위로 사무분담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음
- 13) 고등법원 합의부의 운영에 관한 지침 및 법관 인사 위원회에 따라 사무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장기화할 필요성 적음
- 14) 서울/수도권 초임 경향교류 판사의 지방순환근무의 경우 대체로 배석판사로서의 근무가 대부분이고, 일부 수도권 소재 법원 근무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도 예외적이어서 실제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등 전문법원

- 해당 분야의 특수성 고려하여 각 전문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함

▣ 소규모 지원

- 가동인원이 적고, 매년 인원의 증감이 발생하므로 각 지원이 구체적 사정에 따라 1법원, 1사무분담 원칙 적용 여부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형사재판부의 경우 구체적 사정을 반영할 수 있는 예외 설정 필요

- 공판중심주의의 정착 등으로 인한 기일 부담 증가(주 4~5회), 디지털 증거의 등장으로 인한 기록 분량 증가, 형사재판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한 부담 등으로 많은 판사들이 육체적·정신적 피로를 호소하면서 형사재판장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함 ⇨ 형사재판장의 사무분담 기간을 일률적으로 3년으로 고정하는 경우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판사들의 사기 저하 우려가 있으므로, 2년간 형사재판을 담당한 후 건강이나 육아 문제 등 사정으로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법원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무분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설정함이 바람직함

다. 사무분담 장기화 원칙의 시행

▣ 사무분담예규 개정 및 시행 ⇨ 개정 후 전입 법관부터 전면 실시

- 사무분담예규를 개정하여,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선언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

4. 사무분담 장기화에 관한 인식 및 분석

가. 설문조사 실시 개요

- ▣ 수범자인 법관¹⁵⁾과 사법수요자인 변호사¹⁶⁾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응답률 및 구체적인 응답 내용 등은 별첨 설문조사 결과 참조

나. 설문조사 내용의 분석

15) 대상을 ①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사법행정지원법관 등(이하 법원장 등)과 ② 나머지 법관 전체로 분류한 후, 설문조사 문항을 나누어 2트랙으로 실시함

16)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함



▣ 전체 법관 등 대상 조사결과 검토

- 사무분담 장기화의 방향성에는 찬성하나 현실적인 시행 및 구체화 방안에 대한 우려¹⁷⁾가 확인됨 ⇨ 160여개의 다양한 개별의견이 개진되었고, 대체로 문제점 및 부작용 완화를 위한 실천적 방법 시행을 요구함
- 민사재판장 사무분담 장기화는 반대하는 의견이 근소하게 높고(찬성 47.25% / 반대 51.12%), 형사재판장 사무분담 장기화는 더 높은 비율로 반대의견이 많음(찬성 24.5% / 반대 73.25%)
- 배석판사 사무분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다소 드러남

▣ 사법수요자 대상 조사결과 검토

- 전반적으로 사무분담 장기화(배석판사 포함)에 대한 높은 찬성률 확인
- 형사재판장에 대한 장기화 수요가 민사재판장보다 상대적으로 낮음
- 다소 낮은 응답률(0.86%)을 고려하면 설문조사 결과가 사법수요자의 의견을 완전히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주된 경향성과 문제의식은 구체적인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 마련에 참고할 만함

5. 사무분담 장기화 부작용 최소화 방안 검토

가. 『1 법원, 1 사무분담』 원칙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부작용 개관

- ▣ 법관들 사이의 형평성¹⁸⁾ 논란, 재판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조기 시정의 어려움, 법관들 사이 사무분담에 관한 갈등 증가, 업무처리가 부진한 재판장에 대한 견제수단 상실 등

나. 법관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 극복 방안

1) 단기과제 : 관련 예규 개정 및 비선호재판부에 대한 업무상 배려

17) 비선호보직의 존재, 그로 인한 법관 사이의 형평성 저하, 현재의 인사 및 사무분담에 관한 제도 하에서 기존 사무분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곤란한 점 및 재판부 구성원 간 갈등 해소의 어려움 등

18) 현행 사무분담 체계가 가지는 법관들 사이의 형평 도모, 근무환경 변화로 인한 분위기 쇄신, 전보인사로 인한 충격 완화 등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고, 장기간 비선호 사무분담을 담당하는 법관들의 사기가 저하되며, 법관들이 경험할 수 있는 사무분담의 종류가 감소함



■ 사무분담예규 개정안 마련

- 법관들에게 사무분담을 확정할 때 직전 사무분담이 반드시 고려되고, 사무분담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무분담에 대한 법관의 실질적인 이의절차가 보장될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 사무분담예규는 신속하게 개정 가능하므로, 새로운 인사제도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일부나마 즉시 완화 가능

■ 비선호재판부에 대한 업무상 배려

- 임시 예산 확보를 통한 형사 기록 전자화로 스마트워크 대상 확대, 지방권 근무 형사재판장에게 스마트워크의 신청 시 우선권 부여 등

2) 중기과제 : 비선호 사무분담 담당 법관에 대한 보상체계 도입

■ 직무성과급 체계 개편

- 법관 업무 자체의 내재적 만족도나 사명감만을 강조하고 외재적인 보상을 도외시하면 법관들의 동기 부여가 어려움(사법수요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이를 지적하는 의견이 개진됨) ⇨ 직무성과급 체계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 현재 형사재판부 근무법관 등 일부 보직에 대하여 반기당 20~50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으나,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임

■ 직후 사무분담에서의 배려

- 각급 법원에서 직전에 비선호 사무분담을 담당한 법관들에게 선호 사무분담에 관한 우선보임권을 부여하거나, 희망에 따라 비선호 사무분담에서 배제되는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안, 직전에 선호 사무분담을 담당한 법관들을 비선호 사무분담에 우선 보임하도록 하는 방안 등

■ 비선호 사무분담 담당 사실을 평정에 반영, 비선호 사무분담을 장기간 담당한 판사에 대한 예우 강화(예 : 3년차 형사합의재판장에 대한 차량 제공) 등

3) 장기과제 : 재판부별 업무부담의 균질화를 위한 노력

■ 비선호 재판부는 해당 업무의 특성에 더불어 각 재판부별 업무난이도와 업무량이 불균등하기 때문에 발생



- 각급 법원에서 선호 사무분담에 추가 업무량을 부여하고 비선호 사무분담의 업무는 경감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부간 업무부담 편차를 조정할 필요
- 장기과제로 전담재판부 폐지안, 형사전문법관 도입안 등 검토

다. 그 밖에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한 검토

- 재판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조기 시정의 어려움
 - 사법정책분과위원회에서 배석판사의 사무분담 장기화는 건의하지 않기로 결정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우려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법관들 사이 사무분담에 관한 갈등 증가
 - 사무분담 장기화제도가 정착되면서 장기적으로 각 재판부 사이의 업무량, 난이도 등이 유사하게 설정되면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업무처리가 부진한 재판장에 대한 견제수단 상실
 - 기관장 등이 적절한 업무 소통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하고, 예규 개정안 제4조 제4항 제8호에 의하여 사무분담변경하는 방법이 있음

6. 사무분담예규 개정안 검토

가. 『1법원, 1사무분담』 원칙 선언에 관한 예규 개정규정 검토

1) 예규 개정에 관한 분과위원회 논의 사항

- 개정안 본문에 1법원, 1사무분담 원칙을 선언하고, 단서로 예외가 되는 각 호를 열거하는 방식을 취함
- 적용 제외의 범위
 -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 민사소액전담, 배석판사, 전문재판부 근무법관, 장기근무법관, 전문법원, 고등법원, 2년간 형사재판부에 근무한 법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소규모 지원 포함¹⁹⁾)

19) 각 지원에서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므로, 사법정책분과위원회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법원의 규모를 확정하지는 않기로 논의함.



2) 개정안 초안

- ▣ 별지 신규조문 대비표 제4조 제4항 부분 참조

나. 종전 사무분담을 고려하는 내용의 예규 개정규정 검토

1) 예규 개정에 관한 분과위원회 논의 사항

- ▣ 직전 사무분담을 반드시 고려하도록 새로운 항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함
- ▣ 직전 사무분담의 고려 정도 : 6년
 - 모든 직급을 기준으로, 적어도 3종류의 직전 사무분담을 고려 가능

2) 개정안 초안

- ▣ 별지 신규조문 대비표 제4조의6항 부분 참조

다. 사무분담 결정에 대한 이의절차 실질화에 관한 예규 개정규정 검토

1) 예규 개정에 관한 분과위원회 논의 사항

- ▣ 이의절차와 사무분담 확정 절차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새로운 항을 제정하는 방식을 취함
 - 각급 법원에서 전보인사 발표 전 재판부별 증·폐부안을 확정하고, 정기인사 발표 시 확정된 증·폐부안을 기초로 근무 예정 법관들에게 공식사정을 고지한 다음, 법관들로부터 사무분담희망원을 제출받아 사무분담 결정
 - 사무분담 확정 전 사무분담안을 공개하고 이에 대하여 법관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 및 확정된 사무분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 ▣ 대략의 절차를 사무분담예규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각급 법원의 내규로 정하면 족함
- ▣ 이의절차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려면 법원행정처 차원에서 인사 발표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

2) 개정안 초안



▣ 별지 신구조문 대비표 제4조의7항 부분 참조



별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4조(사무분담의 확정)</p> <p>④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다음 각 호에 정한 기간 안에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재판장인 법관: 2년(다만, 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부의 경우에는 각 1년)</p> <p>2. 재판장이 아닌 법관: 1년</p> <p>3.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 해당 기간(이 호는 제1·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제4조(사무분담의 확정)</p> <p>④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을 확정할 경우에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이 <u>해당 법관의 법원 및 지원 근무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단, 변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 기간은 3년을 상한으로 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u>형사 정식재판청구사건 전담부 및 민사소액사건 재판장 : 최소 근무기간 1년</u></p> <p>2. <u>재판장이 아닌 법관: 최소 근무기간 1년</u></p> <p>3.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전문 분야의 재판사무를 담당하는 판사로 보임된 법관: 해당 기간(이 호는 제1·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p> <p>4. <u>장기근무법관</u></p> <p>5. <u>고등법원 근무 법관</u></p>



	<p>6. 행정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근무 법관</p> <p>7. 2년간 형사재판부에 근무한 법관이 사무분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p> <p>8. 분담사무의 특성, 법관 개인이나 법원, 지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위 기간 안에 사무분담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p>
<p>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4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기간 안에 해당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p>	<p>⑤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4항 <u>본문</u> 또는 제3호의 기간 안에 해당 법관의 본안사건에 관한 사무분담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p>
<p>⑥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어 제4항 제1호의 기간을 그보다 장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때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p>	<p>⑥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정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사무분담을 확정함에 있어 <u>사무분담</u> 기간을 그보다 장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지체 없이 해당 사무분담 기본원칙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이때 지원장은 소속 법원장을 경유하여야 한다).</p>



<p>제4조의6 (재판부 배치 시 고려사항)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전문성, 종전 사무분담(타 법원에서 한 사무분담을 포함한다)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 배치 등의 사무분담을 정한다.</p>	<p>제4조의6 (재판부 배치 시 고려사항)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재판의 효율과 적정, 법관의 희망, 전문성, <삭제> 및 형평 등을 고려하여 재판부 배치 등의 사무분담을 정한다. ② 제1항의 사무분담을 정할 때에는 법관의 직전 6년간의 사무분담(타 법원에서 한 사무분담을 포함한다)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p>
	<p><신설> 제4조의7(사무분담 확정의 절차) ①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무분담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법관들에게 해당 법원의 재판부 종류와 수 및 공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 법관들로부터 사무분담 희망원을 제출받아야 한다. ②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무분담을 확정하기 전 해당 법원 또는 지원에 근무하기로 정하여진 법관들에게 사무분담안을 공개하고, 위 법관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확정된 사무분담에 대하여 해당</p>



	<p>법관은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판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체 없이 위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p>
--	---------------------------------------------------------------------------------------------------------------------